

## 4.1.13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규정

제정 2000. 04. 21.  
전부개정 2017. 09. 1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물품구매·제조·수리 및 시설공사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의 물품구매·제조·수리 및 시설공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관할청의 특별지침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구분) 예산의 통제 행위와 집행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 제2장 물품시설 예산 집행

제4조(구매부서) 모든 물품은 사무처에서 구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 해당 부서는 사무처에 청구하여 구매 타당성 여부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의 구매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명확한 경우
2. 300만원 이하의 긴급구매를 요하는 물품으로 지체 없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특정인의 기술, 설비나 시장성이 없는 희귀한 물품으로 해당 부서에서 구매함이 타당한 경우
4. 단가계약 물품 또는 각 부서에 배정된 용품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5조(계약체결자 및 담당부서) 계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에 관한 사무행위는 계약담당자가 주관한다.

제6조(청구절차) ① 제반물품의 구매·제조·수리 및 시설공사예산의 집행 근거는 당해 연도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전용승인을 받은 후 청구한다.

- ②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위임된 일반물품(사무용품, 소모품, 사무용 집기, 비품 및 기계기구)의 구매, 제작 및 수리 요구서는 소요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구매를 요구한다. 사무처는 구매의뢰서를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 및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③ 제2항 이외의 주요물품(일반물품 이외의 것)을 구매, 제조 및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의뢰서를 작성(기안, 청구서 등)하여 총장의 결재를 필한 후 사무처에 집행을 의뢰한다.

- ④ 사무처에서는 의뢰서를 검토한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⑤ 시설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의뢰서(기안, 청구서 등)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처에 송부한다. 다만, 공사 중 일부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작업일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 등을 정확하게 기재, 비치하여야 하며 전문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직영 공사 주요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사무처에 별도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구매결재 구분)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사업의 중요도, 금액에 따라 위임 전결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입찰방법) 물품의 매매, 도급공사 발주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일반 경쟁입찰에 불일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제한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봉합견적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일반경쟁입찰

제9조(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2.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제조, 물품의 공급 기타에 있어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부적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제10조(입찰참가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3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4.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5. 자격증명서류
6.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7. 기타 공고상에 표시된 서류

② 제1항의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로 한다.

제11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일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10일 이전까지 예정가격에 따라 신문, 게시, 학교 홈페이지, 기타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본 대학교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실정에 부합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일부터 입찰 또는 개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2. 경쟁입찰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함)
4.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비치) ①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 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포함한다.

② 예정가격결정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 가격요인과 수량,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정가격조서는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일시, 장소에서 입찰자 참석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5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

제16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한 입찰의 경우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9. 부적당업자가 행한 입찰

제17조(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공사의 입찰방법) ① 시설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정별 내역서 및 공사에 대한 지방서를 배부,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③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일공사에 대하여서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②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낙찰) ① 지출이 수반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제1차 공사 입찰금액과 부기한 총 공사 입찰금액이 각각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총 공사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21조(동가입찰의 낙찰자결정) 입찰 결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공고입찰의 공고기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을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일까지(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일부터 입찰 또는 개찰일까지 포함)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서의 작성) 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서식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칠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불필요할 때
5. 기타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한다.

제25조(계약변경) 계약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지체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소정의 지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자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이상, 5/1000이하에 상당하는 지체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27조(제한경쟁입찰 기준) ①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의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에 의한 제조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입

②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명경쟁입찰 기준) ①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②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도 무방하다.

제29조(입찰자의 지명) ①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입찰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지명경쟁 입찰참가통지서(별지서식 제4호)를 통보하고 입찰 전일까지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별지서식 제5호)를 제출받아 입찰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할 때에는 전화연락으로도 할 수 있다.

제30조(입찰통지의 내용) 지명입찰통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장소와 일시
3. 입찰유의사항(현장설명일시)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일시 및 구비서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일반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부적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비치사항은 일반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수의계약

제32조(수의계약 기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5.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6. 긴급구매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경쟁에 붙여 구매를 할 경우 납품기한이 초과되어 학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사무처에서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사유
  2. 계약의 목적
  3.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
  4. 계약상대자의 성명, 상호, 주소
  5. 계약서안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33조(단가계약) ① 자주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물가변동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시는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그 내용을 구입 품의서에 첨부기록하여야 한다.

② 견적서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업체의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구입예정가격 총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
2. 정부고시가격, 협정가격 등 그 성질상 비교견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특수 제조를 필요하거나 시장성 물품이 아닌 물품을 구입한 경우

## 제6장 보증금의 납부

제35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하며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국·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건설 및 전기공제조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별지서식 제6호)

제36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금의 10/100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국·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증권 또는 전기공제조합보증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공사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할 수 있다.(별지서식 제7호, 별지서식 제8호)

제37조(하자보증금의 납부) 공사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계약금액의 2/100이상, 5/100이하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①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검사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하자보수 보증금담보 책임기간)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하자보수이행)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부서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토록 시공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공자가 통고한 기간 내에 그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하고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 조치한다.

제41조(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초당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2. 보증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으로 한다.
3. 피보증사항은 본 대학교가 보증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입찰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의 개시일이 입찰일 이전이어야 한다.
5.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보증기간의 개시일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이어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기간 종료일 이후 이어야 한다.

제42조(보증기간의 연장)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거나 계약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한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장 검수 검사

제43조(물품검수조서의 작성) ① 내·외자로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검수자는 반드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9호)

② 제1항의 구체적인 검수요령은 별도 검수규정에 의한다.

제44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명, 규격, 품질 등이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 현장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준공검사)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에 의거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시정조치 완료일을 검사 완료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0호)

제46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47조(하자검사) ① 검사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사항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및 금액

2. 계약대상자

3. 납품 및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③ 계약 담당직원은 하자검사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일반·제한·지명) 입찰서(제8조제1항관련)

## 입찰서

입찰 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W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 특 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①

\_\_\_\_\_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 참가 통지서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찰건물					
	현장설명	일시	20 . . . . .	입찰	일시	20 . . . . .
		장소			장소	
	입찰등록 마감일시					
서류제출시		전화번호				

본 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초당대학교                      사무처장                      (인)

\_\_\_\_\_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납부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개찰일시	20 . . .
입찰건명			
입찰금액	금 _____ 원정 W		
보증금내역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 . .

입찰참가자 주 소  
상 호 또 는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  
(인)

초당대학교 귀중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유가증권취급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상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예산회계법 제7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초당대학교 귀중





